

의안번호	2204478
의 퇴 인	이건태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5.
추계번호	24A4166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억 3,400만원, 2029년 12억 5,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7억 2,200만원(연평균 11억 4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(안 제11조의2)	734	1,236	1,254	1,240	1,258	5,722	1,144

주: 2025년의 경우 시행일을 고려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의 50%만 반영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○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(제13항) － 1.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 － 2.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 － 3.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는 관계부처 합동(2023. 6. 29.)의 「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」의 계획에 근거함
 -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최근 자료(2024년 8월말 기준)에 근거하여 추정함
- 개정안의 소화설비는 그 종류와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 당 소화기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 후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추계하며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 - 2025년의 경우 시행일을 고려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의 50%만 반영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충전사업자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비용 및 책임보험료”로 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전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총량 추정치에 운영주체

별 비중을 곱하여 추정함

- 관계부처 합동 ‘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’(2023. 6. 29.)에 따르면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5년 59만기, 2027년 85만기, 2030년 123만기가 보급될 계획임
 - 동 계획 규모를 바탕으로 2024년, 2026년, 2028~2029년은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추정함

[표 2]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정: 2023~2029년

(단위: 만기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	실적	추정	계획	추정	계획	추정	추정	계획
전기자동차 충전시설	31	43	59	72	85	98	110	123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와 관계부처 합동(2023. 6. 29.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규모는 환경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8월 누적 기준 2.5%(=(8,419기+1,068기)/381,085기)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3]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: 2019~2024년 8월

(단위: 기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.8
국가(환경부)(A)	4,161	5,656	6,841	8,005	8,419	8,419
지방자치단체(B)	387	512	670	799	952	1,068
한국전력(C)	7,827	8,947	9,775	10,622	10,772	10,936
민간 등 기타(D)	35,175	48,913	81,339	180,353	292,200	360,662
합 계(E)	47,550	64,028	98,625	199,779	312,343	381,085
((A+B)/E)	(9.6)	(9.6)	(7.6)	(4.4)	(3.0)	(2.5)

주: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 등록 기준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연도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및 신규 충전시설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

[표 4]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정: 2025~2029년
(단위: 만기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전기자동차 충전시설	46	59	72	85	98	110
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(신규)	1.1	1.5 (0.4)	1.8 (0.3)	2.1 (0.3)	2.4 (0.3)	2.7 (0.3)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[표 4]에서 추정한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)에 소화설비 단가 및 책임보험료를 곱하여 추계함
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단가는 유사사례를 참고할 때 2023년 기준 26.4만원이며, 추계기간 동안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검색 결과, 2023년 기준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단가는 264,000원으로 추정²⁾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당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10만원으로 가정하며, 화재 발생률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대인 1.5억/인당(연간한도 100억원), 대물 10억원/사고당 기준으로 산정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당 연간 약 10만원의 보험료가 발생 가능(자료: 손해보험협회)³⁾

□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7억 2,200만원으로 추계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 10.)

(단위: %)

연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	2.5	2.1	2.0	2.0	2.0	2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2)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입찰공고(입찰공고번호: 202304116267-00, '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 소화기 구매')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31개 구입에 8,184,000원이 입찰금액임
- 3)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, 시설 형태별 차등 위험도에 따른 추가할인을 계산 등을 위한 충전소 상세현황 자료가 부족하고 향후 증설 시 형태별 개수 추정 한계 등으로 평균단가를 제시하였으며, 다만, 의무보험이 도입되어 손해보험 가입이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 충전시설 1기당 보험료가 연간 10만원 이하로 인하될 수 있음

- 2025년의 경우 시행일을 고려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의 50%만 반영함

[표 5] 국가·지자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설치 및 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(안 제11조의2)	734	1,236	1,254	1,240	1,258	5,722	1,144

주: 2025년의 경우 시행일을 고려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의 50%만 반영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‘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’(2023. 6. 29.)의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준용하고, 소화설비를 소화기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assembly.go.kr